

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2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. . 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('95. 1. 5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95. 7. 6)으로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'과태료 부과기준'이 동법 시행규칙(통상산업부령 제23호 '95. 8. 11)에 신설됨에 따라 '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'를 폐지코자함

□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

□ 첨부

1.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2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(충청북도조례 제1866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